
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표

인명구조사 교육·시험위원회

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표

목 차

□ 평가일반

- ① 실기평가 유의사항 1
- ② 총괄 채점표 2

□ 기초 역량 평가

- ① 기초체력 및 수영능력 3

□ 구조기술 평가

- ① 수중 인명구조 4
- ② 수상 인명구조 5
- ③ 로프 하강 및 등반 6
- ④ 수직구조 7
- ⑤ 맨홀 인명구조 8
- ⑥ 수평구조 9
- ⑦ 교통사고 인명구조 10

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 유의사항

1. 유의사항

1. 평가관은 훈령에 의해 지정된 자로 하며 특히,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실시한다.
2. 평가관은 평가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안전요원의 배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안전사고발생 우려 시 즉시 평가를 중지하고 정위치 한다.
3. 평가중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동 및 안전에 관한 직접적인 사항 위반시에는 불합격 처리한다.
4. 평가관은 응시자의 본인 여부(응시표 및 신분증)를 확인해야 한다.
5.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응시자는 무단행동금지 및 평가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6. 모든 평가는 평가관의 “실시” 지시에 복창 후 실시하고 완료 후 평가관에게 “완료” 보고 후 평가관의 지시에 따르며, 제한시간 내에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관이 종료(정지)신호를 알리면 즉시 모든 행동을 정지하고 평가관의 통제에 따른다. (평가 종료 10초 전 등 예령은 없음)
7. 평가항목 중 세부항목 하나라도 미수행 또는 부적절 할 때는 당해 항목점수를 0점 처리한다.
 - * 순서에 준하여 해당항목을 실시하지 않고 다음 항목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항목 감점
 - * 주요항목(실격으로 표기 항목)을 미실시한 상태로 완료보고를 하거나 평가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 또는 시간초과를 계산해두고 미완료 상태에서 완료보고 시 불합격
8.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(본인책임)
9. 평가가 시작되면 종료 전까지 재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.
10. 평가관은 각 종목별 안전사항에 관한 내용 등을 설명하고 종목이동시 평가관에게 평가표를 직접 전달하며, 응시자에게 평가표를 보여주는 행위, 허위작성, 응시자와의 접촉을 금한다.
 - * 단, 불합격자에게 실격사유 및 감점항목에 대한 설명을 위해 평가표를 확인시키는 것은 예외로 한다.

2. 평가 진행방법

1. 인명구조사 2급 실기평가는 기본역량평가 2개 항목과 구조기술평가 7개 항목으로 총 9개 항목이며 기본역량평가를 통과하여야 구조기술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.

구 분		평 가 항 목	
인명구조사 2급	기본역량평가	① 기초체력측정	② 기초수영능력
	구조기술평가	① 수중인명구조 ③ 로프 하강 및 등반 ⑤ 맨홀인명구조 ⑦ 교통사고 인명구조(에어백, 유압장비)	② 수상인명구조 ④ 수직구조 ⑥ 수평구조

2.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서 에어백과 유압장비 중 평가관이 지정하는 1개 종목을 실시한다.
3. 항목별 평가방법은 단계적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평가항목 진행은 평가관의 지시에 의한다.
 - * (응시자) “하강준비 끝” “등반준비 끝” → (평가관) “하강” “등반”
4. 평가 시작 전 장비점검 등 평가 준비를 위한 시간 약 3분을 응시자에게 제공한다.
5. 감점합계가 60점 초과 및 제한시간을 초과한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.
6. 합격은 각 평가항목 40점 이상에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한다.

인명구조사 2급 총괄 채점표

결			
재			

1. 응시자 인적사항

응시번호		소 속		계 급		성 명	
------	--	-----	--	-----	--	-----	--

2. 평가항목 및 점수

구 분		평 가 항 목	항 점 수	평 점 수	비고
기본역량 평 가	1	기초체력측정	합/불		
	2	기초수영능력(수영, 입영, 잠영)	합/불		
구조기술 평 가	1	수중 인명구조	100		
	2	수상 인명구조	100		
	3	로프 하강 및 등반	100		
	4	수직구조	100		
	5	맨홀 인명구조	100		
	6	수평구조	100		
	7	교통사고 인명구조(에어백, 유압장비)	100		1개 항목 지정

최 종 평 가 결 과

합격		불합격		총점 (평균)	()
----	--	-----	--	------------	-----------

인명구조사 2급 기초역량 평가표

기초역량평가<기초체력, 기초수영>

응시번호		성 명		(서명)		평가관		(서명)
------	--	-----	--	------	--	-----	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 장비

- 준 비 물 : 기동복(활동복, 편의복), 기동화(운동화 가능), 수영모, 수경, 수영복(전신 또는 부력을 가진 수영복 불가)
- 평가장비 : 앰프(왕복달리기 음원), 초시계, 호각, 레스큐 튜브

종 목	평 가 항 목	
기초체력	1. 20m 왕복오래달리기를 음원에 맞춰 60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* 60회까지 음원시간 내 20m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선 출발하는 경우 실격 <평가관 1회 구두 및 손을 들어 경고 → 2회 실격 >	
기 초 수 영 능 력	수영	2. 제한시간(5분 이내)에 영법에 관계없이 200m 거리를 수영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. * 수면 이동 중 신체일부가 바닥에 닿는 경우 실격 * 수면 이동 중 벽면 또는 안전줄을 잡는 경우 실격 (방향 전환시는 제외)
	입영	3. 수면에서 총 3분을 실시하되, 최초 2분은 손과 다리를 모두 사용하여 얼굴이 바로선 상태로 구강(아래 입술)이 수면 위에 떠 있어야 하고, 남은 1분은 양쪽 다리만을 사용하여 얼굴이 바로선 상태로 구강 및 양 손목 이상이 수면 위에 떠 있어야 한다. * 몸통 회전(90° 이상), 구강이 수면아래, 몸 또는 머리(귀가 수면에 닿는 경우)가 누운 자세, 이동하는 경우 실격 * 수난구조훈련장 벽면, 지지물 등에 접촉하거나 다른 응시생과 신체접촉 등으로 평가를 방해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실격 * 평가기준을 불분명한 상태로 유지하는 경우<평가관 1회 구두경고 → 2회 실격 >
	잠영	4. 수중(몸 전체가 물 속)에서 출발하여 20m이상 이동(영법은 자유) * 최종 통과지점(20m) 이내에 신체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 실격 (예 : 머리, 엉덩이, 손, 팔, 발, 다리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경우) * 20m 통과 기준은 양 발가락 끝

평 가 결 과			
기초체력 : 60회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, 60회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	합 격		불합격
입 영 : 3분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, 3분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	합 격		불합격
잠 영 : 20m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, 20m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	합 격		불합격
기초수영(제한시간 5분) : 분 초	합 격		불합격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1. 수중 인명구조		(일부 항목 제한시간 부여)	
응시번호	성 명	(서명)	평가관
			(서명)

○ 준비물 및 평가 장비

- 준 비 물 : 잠수장비세트(백마운트BC 허용), 수모, 오리발, 습식잠수복(3mm이상, 반팔 및 튜닉제외)
- 평가장비 : 로프(11mm×2m), 카라비너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잠수복을 착용 후 평가장비를 지정된 장소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여 조치하고 평가간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진행이 불가한 경우 불합격		
장비 결합 (15)	1. 잠수장비 결합(바닥에 정렬된 장비를 결합) → 잠수장비 착용 ■ 실린더점검 → BC결합 및 결합상태 점검 → 호흡기 결합 → 호흡기 BC연결 → 실린더개방 → 장비기능 점검<장비결합완료> / <장비착용> 웨이트착용 → 장비착용 → 오리발 및 수경착용 → OK수신호 * 장비점검시간이 3분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이며 5분을 초과하는 경우 실격 <제한시간 내 O링 교환기능> ※ 평가관의 장비결합 실시부터 응시생의 장비결합완료 복창까지 시간을 측정<장비착용 제외> *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실린더점검(외관, O링, 공기상태), BC결합 및 결합상태 점검 미실시 또는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호흡기의 연결(실린더, BC)이 부적절하거나 실린더개방 방법 및 호흡기, BC 등 장비점검 미실시한 경우 감점 * 웨이트 및 이하 잠수장비 착용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실린더의 개방 압력(공기량)이 150bar 이하인 경우 실격	15	
입수 (10)	2. 평가관 입수신호 → 입수지점 확인 → 서서입수 → 장비이상유무확인 → OK수신호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미실시 또는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서서입수 동작 부적절하거나 BC에 공기를 절반이상 채우지 않고 입수하는 경우 감점	10	
하강 (10)	3. 평가관의 하강 신호 → OK수신호 후 하강수신호 → 하강 → OK수신호 * 하강 수신호 부적절 또는 미실시한 경우 감점 * 하강속도(분당 18~24m이하)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압력평형 부적절로 상승 후 재하강하는 경우 감점 * 하강자세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	10	
호흡기 찾기 (10)	4. 무릎앉아 대기 → 평가관의 실시신호 → OK수신호 → 호흡기 찾기 실시 → OK수신호 * 주 호흡기 찾기(기울여 찾기, 1단계부터 찾기 / 평가관이 지정) 자세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호흡기 찾는 동안 소량의 공기배출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감점	10	
장비 탈부착 (20)	5. 무릎앉아 대기 → 평가관의 실시신호 → OK수신호 → BC공기배출 → BC탈착 → 장비정렬 → 역순 착용 → OK수신호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미실시 또는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장비정렬시 호흡기의 고임이 있는 등 정렬되지 않은 경우 감점 * 자세가 불안정하거나 BC이탈 및 공기통 상승하는 경우 감점 * 장비착용시 각 벨트결착 및 끈 조절, 고임, 호흡기(압력게이지) 끼임 등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평가관 실시신호부터 실시완료 수신호까지 3분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	20	
수중 매듭 (15)	6. 로프 앞에 정위치 → 평가관의 실시신호 → OK수신호 → 수경탈착 후 팔목에 휴대 → 지지물에 수중매듭(고정매듭+움매듭) → 수경착용 후 물빼기 → OK수신호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미실시 또는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수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팔목에 휴대하지 않은 경우 감점 * 로프매듭(고정매듭+움매듭)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수경 물빼기가 부적절하거나 수경에 물이 차있는 경우 감점(2회까지 시도인정) * 평가관 실시신호부터 실시완료 수신호까지 2분을 초과하는 경우 감점	15	
상승 (20)	7. 평가관의 상승신호 → OK 및 상승수신호 → 상승 → 수면 부력 확보 → OK수신호 * 원손으로 공기조절장치를 파지하지 않거나 상승자세(360° 시주경계 미실시 및 상하반복)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상승 후 부력조절기(BC)에 부력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 * 상승속도(분당9m) 부적절한 경우	20	
공통 사항	※ 평가도중 공기통 등 장비이탈 및 장비이상 또는 수준미흡으로 평가진행이 불가한 경우 실격 ※ BC내에 웨이트를 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에 임한 경우(최종득점에서 40점 감점) ※ 평가관에게 평가표에 기재된 OK수신호를 미실시하거나 부적절한 경우(해당항목별 5점 감점) ※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	

평 가 결 과	100	
제한시간 : 일부 항목 제한시간 부여	합 격	불합격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2. 수상 인명구조

(제한시간 : 1분 10초)

응시번호		성 명	(서명)	평가관	(서명)
------	--	-----	------	---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 장비

- 준 비 물 : 수모 또는 후드, 마스크, 스노클, 오리발, 습식잠수복(3mm이상, 튜닉이나 반팔제외)
- 평가장비 : 마네킹(약25kg), 수중원형장애물(지름 약1m)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개인(평가)장비를 착용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		
점검 (10)	1. 스킨장비 착용(슈트, 오리발, 마스크, 스노클)한 상태에서 시작 → 입수지점 안전확인 → 입수(안전입수) → 장비의 이상유무 점검 → 평가관에게 신호(OK) → 호각 출발 * 입수지점 확인을 하지 않거나 수면을 바라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점 * 앉아입수(안전) 동작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최종적으로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지 않거나 OK 수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감점 ⇒ 평가관은 OK 수신호를 응시자의 출발준비완료 신호로 간주	10	
이동 (30)	2. 응시자 점검완료 OK수신호 → 평가관 출발신호 → 수면이동 → 수중장애물 통과 → 수면이동 * 수면 이동시 전방(스노클 활용)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 감점(10) * 수면이동을 하지 않고 잠영으로 계속 진행하는 경우 감점(20) * 수면이동시 레인 또는 벽면에 신체가 닿는 경우 매회 감점(10) * 수중장애물 통과 시 장비 및 신체 일부가 장애물과 닿는 경우 감점(10) * 수중장애물을 통과하지 않거나 수중장애물 통과 시 장애물을 손(팔)으로 잡고 통과하는 경우 감점(30) * 시선을 전방으로 한 영법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스노클을 물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 감점(20)	30	
인양 및 운반 (60)	3. 반환점에 있는 요구구조자(마네킹 25Kg)를 인양하여 출발점까지 운반 * 잠영능력 부족 등으로 마네킹을 한 번에 인양하지 못한 경우 감점(20) 2회 실격 ⇒ 인양 시 신체가 바닥에 닿거나, 반환점의 벽면을 닿는 것은 허용(감점 아님) * 인양 완료시점에서 방향전환을 위해 벽면이나 데크 또는 레인을 잡거나 미는 경우(30) * 마네킹 운반 시 레인 또는 벽면에 신체가 닿는 경우 매회 감점(10) * 운반 시(인양부터 도착까지) 마네킹을 바라보지 않는 경우 감점(10) ⇒ 단, 진행방향을 확인하는 경우 제외하며, 운반시에는 스노클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* 구조자(응시자)의 구강 또는 마네킹의 구강(입)이 물에 잠긴 경우 매회 감점(10) * 마네킹의 양 겨드랑이를 파지하지 않고 다리, 목, 한 겨드랑이 등을 잡고 이동하는 경우 감점(20) * 마네킹 운반 중에 안전줄 또는 벽(바닥)을 잡거나 멈춰 선 경우 실격	60	
공통 사항	※ 평가 도중 장비(오리발, 마스크 등)가 이탈되는 경우 감점(10) ※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	

평 가 결 과		100
제한시간 : 1분 10초	합 격	불합격
최종 평가기록 :	분	초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3. 로프하강 및 등반

(제한시간 : 10분)

응시번호	성 명	(서명)	평가관	(서명)
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 장비

- 준 비 물 : 기동복/화(활동복), 안전벨트(상·하 일체형), 안전장갑, 구조헬멧
- 평가장비 : 로프(11mm×35m), 8자하강기, 등반기, 카라비너, 추락방지장비, 확보줄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평가장비를 휴대하여(로프는 3회 이상 감아 정리)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 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		
준비 및 설치 (25)	1. “현장안전확인” 후 확보로프와 카라비너를 이용하여 자기확보 실시 * 자기확보줄을 안전벨트의 D형고리 이외 장비걸이에 걸착하는 경우 감점	5	
	2. 1차 확보물에 말뚝매기 후 로프 투척 * 로프투척시 아래를 보지 않거나 “로프 또는 낙줄” 복창을 하지 않을 경우 감점 * 로프를 끝줄부터 투척 또는 끝줄을 나중에 투척하지 않을 경우 감점 * 투척한 로프가 꼬이거나 엉켜서 끌어올렸다가 다시 투척하는 경우 감점	5	
	3. 로프 여유길이(1~3m) 조절 후 2차 확보물에 말뚝매기 및 움매듭 실시 * 여유길이를 초과 또는 미만인 경우 감점 * 말뚝매기와 움매듭이 3cm이상 이격시 감점 * 로프의 여유길이를 실제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한 경우 감점	5	
	4. 하강장비 및 확보장비(추락방지) 결합 실시 후 자기확보 해체 * 하강장비 및 확보장비의 결합이 잘못된 경우 감점 * 자기확보를 분리하지 않고 하강자세를 취할 경우 감점	10	
하강 및 정지 (30)	5. “하강준비 끝” 복창 후 평가관의 지시에 뒷걸음 또는 미끄러져 내려가는 자세로 하강 * 하강자세 불안정 또는 점프하거나 실수로 미끄럼, 손이 로프와 모서리사이에 끼일 경우 감점 * 확보장비(아샵)에 락(정지)이 걸리는 경우 감점이며 이를 제한시간 내 조치하지 못하는 경우 실격	10	
	6. 하강 정지 지점에서 정지(바닥으로부터 3m지점) * 발이 정지선을 통과하지 않고 정지할 경우 감점이며 고리로 내려가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 실격 * 정지하지 못하고 바닥에 추락 또는 지면에 신체가 닿을 경우 실격	10	
	7. 정지 상태에서 8자하강기를 이용한 정지자세(로프감기 2회) 실시 후 양팔을 벌리고 “하나, 둘, 셋” 복창하며 3초간 대기 * 정지자세 및 절차가 부적절하거나 확보장비(아샵)에 락(정지)이 걸리는 경우 감점	10	
등반 (25)	8. 등반기 걸착 → 하강장비 해체 → 발등반기 걸착 → 확보장비(추락방지) 확인 * 설치 순서에 맞지 않거나 등반기에 주로프(하강로프) 연결하지 않은 등 등반장비 걸착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	10	
	9. 장비교체 완료되면 “등반준비 끝” 복창 후 평가관의 지시에 등반 실시 * “등반준비 끝” 복창을 하지 않거나 평가관의 등반지시(평가관 점검)를 받지 않고 등반하는 경우 감점 * 등반자세 불안정(몸이 벽에 부딪히는 경우), 최종 올라설 때 자세 불안정(손을 잡고 올라선 경우) 감점 * 확보장비가 허리높이 아래에 위치하거나 팔(겨드랑이) 안쪽에 위치 또는 보조로프가 확보장비에서 늘어진 상태로 2회 등반 시 구두경고 및 감점, 2회째 실격	15	
철수 (20)	10. 등반완료 → 자기 확보 실시 → 등반장비 해체 * 안전확보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구두경고 및 감점, 2회 실격	10	
	11. 로프끌어올림 → 로프정리(나비사리기) → 자기 확보 해체 → 시작지점 정위치 “완료” 복창(모든 장비회수) * 철수 순서가 맞지 않거나 로프정리 상태(양쪽의 길이가 ±10cm 이내로 일정)가 불량한 경우 감점 * 로프를 끝줄부터 두겹으로 사리지 않거나 로프정리 매듭을 3회 이상 감지 않은 경우 감점 * 로프를 정리(사리기)하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실격	10	
공통 사항	※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상태가 불량(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) ※ 각종 장비 추락시 총점에서 1개당 20점 감점(주요장비 추락으로 평가진행 불가시 실격) ※ 신체가 하강지역 지면 바닥에 닿을 경우 실격 ※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수량	감점

평 가 결 과			100	
제한시간 : 10분				
최종 평가기록 :	분 초	합 격	불합격	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4. 수직구조

(제한시간 : 15분)

응시번호		성 명	(서명)	평가관	(서명)
------	--	-----	------	---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 장비

- 준비물 : 기동복/화(활동복), 안전벨트(상·하 일체형), 레펠장갑, 구조헬멧
- 평가장비 : 로프(20m), 확보로프(2m), 바스켓들것, 도르래, 카라비너, 등반기, 자동확보장비, 확보판, 스위벨, 마네킹, 코드슬링(7~8mm×1.4m), 코드슬링(7~8mm×2m 4개), 테이프슬링(20mm×4m 3개, 20mm×8m 1개), 삼각줄(11mm×4.5m 2개)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평가장비(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)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 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		
들것 고정 (40)	1. “현장안전 확인” 복창 후 현장 위험요소를 확인	5	
	2. 들것 1차 고정(골반부 → 가슴부 → 다리부) * 부위별 매듭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(5점)	15	
	3. 들것 2차 고정 * 매듭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	5	
	4. 삼각줄 결착 및 들것의 균형유지 * 삼각줄의 매듭위치 불량 및 들것에 수평유지가 되지 않거나 감아매기가 바르게 정렬되지 않은 경우 감점	15	
수직 구조 (60)	5. 확보물에 확보지점 설치 후 카라비너와 확보판 연결 <확보지점 : 개인로프를 4회 이상 감은 후 바른매듭+웁매듭 / 4회 중 가운데 2줄에 카라비너 결착> * 확보용 로프와 감아매기용 슬링을 바꿔서 설치할 경우 감점<이후 감아매기 매듭이 불가 등 본인책임> * 로프매듭의 형태 등이 부적절 또는 느슨하여 최초지점으로부터 위아래로 이동되는 경우 감점	10	
	6. 주로프 매듭(두겹8자+웁매듭) → 상단확보점에 결착 → 카라비너 및 스위벨 연결 → 바스켓 들것 결착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하는 경우 감점 * 로프의 방향과 도르래의 위치가 뒤틀려 로프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감점 * 로프매듭의 형태 등이 부적절하거나 고리의 크기가 카라비너 보다 큰 경우 감점	10	
	7. 로프를 자동 확보장비에 연결 → 확보판에 결착 → 로프텐션 * 자동 확보장비가 뒤집어진(통과한 로프가 위쪽에 위치) 경우 감점 * 자동확보장비 결착 후 도르래설치 전 손으로 당겨 기본적인 로프텐션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감점 * 확보장비에 로프를 반대로 설치한 경우 감점, 이를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진행한 경우 실격	10	
	8. 코드슬링을 이중피셔맨매듭으로 연결 → 주로프에 코드슬링을 3회 이상 감아매기 실시 * 로프매듭의 형태 등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(단, 코드슬링 매듭의 잔여로프의 길이는 3cm이상) * 감아매기시 코드슬링이 연결된 매듭부위가 주로프 또는 카라비너에 닿는 경우 감점 * 3회 이상 감아매기한 부분이 바르게 정렬되지 않은 경우 감점	10	
	9. 도르래 등을 이용 5:1 직접 당김 장치 설치 * 도르래의 로프가 한바퀴 이상으로 꼬이거나 확보판에서 ID와 도르래가 심한 마찰을 일으킬 경우 감점 * 5:1직접당김시스템 도르래의 설치가 안될 경우 실격	10	
	10. 바스켓 들것을 지면에서 50cm이상 인양 후 “실시완료” 복창 * 확보지점이 위로 끌려가는 경우 감점 * 인양높이가 바닥에서 50cm이내인 경우 감점 * 코드슬링을 1회 이상 이동시키지 않거나 쥘마를 로프에 상태에서 감아매기 연장을 시도하는 경우 감점 * 인양을 실시하지 않거나 바스켓들것이 지면으로 추락할 경우 실격	10	
공통	※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(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) ※ 요구조자의 들것고정 세부항목을 미실시 하는 경우 실격 ※ 모든 매듭의 형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(단, 슬링의 잔여로프길이 제외) * 매듭의 형태(모양), 매듭과 보조매듭(ex-말뚝매기와 웁매듭)의 간격 3cm미만, 잔여로프의 길이(10~30cm) ※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수량	감점

평 가 결 과		100	
제한시간 : 15분			
최종 평가기록 :	분 초	합 격	불합격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5. 맨홀 인명구조

(제한시간 : 8분)

응시번호		성 명	(서명)	평가관	(서명)
------	--	-----	------	---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 장비

- 준비물 : 기동복/화(활동복), 방화복 상의, 구조헬멧, 레펠장갑, 공기호흡기 세트
- 평가장비 : 맨홀구조기구 세트(도르래 등), 로프, 가스측정기, 랜턴, 요구조자용 안전벨트, 마네킹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평가장비(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)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		
준비 및 설치 (50)	1. 현장안전확인 → 가스측정<유해가스확인> → 랜턴을 이용 요구조자 확인 * “현장안전확인” / “가스측정” / “유해가스 있음” / “요구조자 확인” 미복창한 경우 감점 * 각종 점검 및 확인을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실시하는 경우 감점	10	
	2. 실린더에 기구묶기 후 맨홀내부 공기정화 실시(평가운영상 실린더는 잠시 개방 후 닫음) * 실린더 매듭형태(말뚝+움매듭/말뚝매듭, 잔여로프 길이) 및 지지점에 로프걸착이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실린더가 바닥에 놓혀짐 또는 부딪쳐 큰 충격(충격음)을 받거나 기구묶기한 매듭이 풀린 경우 감점	10	
	3. 역회전방지 도르래(프로트랙션)를 이용하여 ¼ 도르래 설치 * 로프매듭(두겹8자+움매듭) → 트윈도르래 통과 → 싱글도르래 통과 → 트윈도르래 통과 → 역회전방지 도르래 연결 → 맨홀구조기구에 걸착 순서 및 절차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(10) * 매듭의 고리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크거나 잔여로프 길이(10~30cm)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(10) * 역회전방지도르래의 캠을 적절 잠근 경우 감점 후 응시자가 직접조치 * 4:1 도르래시스템이 안된 경우 감점	20	
	4. 움직도르래와 연결된 카라비너(연결점)에 유도로프(두겹8자+움매듭)설치 및 낙출 후 요구조자용 안전벨트 걸착 * 유도로프 매듭의 고리 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크거나 잔여로프 길이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유도로프 설치 및 낙출 또는 요구조자용 안전벨트를 미걸착한 경우 감점 후 응시자가 직접조치 * 유도로프 설치 전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는 경우 감점	10	
진입 및 구조 (50)	5. 공기호흡기 실린더개방 → 하단부에 매듭(고정매듭+움매듭) → 보조자(평가관)에 인계 → 면체 및 헬멧착용 → “진입준비완료” 복창 → 평가관의 “진입” 지시에 맨홀진입 * 공기호흡기를 맨홀진입 시부터 맨홀내부에서 활동 중 양압으로 호흡으로 하지 않은 경우 실격 → 공기호흡기 면체착용 시점부터 양압으로 활동가능 * 매듭의 형태 및 잔여로프 길이 등 부적절한 경우 감점(10) * 헬멧이 벗겨지는 경우 감점(10) * 실린더 개방의 부적절 또는 면체의 부적절한 착용으로 공기가 새는 경우 감점(10) * 실린더 개방시 0링 또는 공기호흡기의 이상으로 평가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실격 <예비 공기호흡기 준비가능>	20	
	6. 요구조자 의식 확인 → 보조마스크 착용 실시 * 의식확인 전 요구조자의 팔을 먼저 올리거나 보조마스크 착용상태(위치 및 머리끈 조임 등) 부적절시 감점 → 내부 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의 보조마스크 이탈시 10초 이내 조치하는 경우는 감점사항 아님	10	
	7. 도르래시스템에 설치한 유도로프 견인 → 안전벨트 분리 * 유도로프를 당길때 충격으로 도르래의 캠이 걸려 연결점이 내려오지 않을시 감점 후 평가관이 조치 → 단, 로프의 꼬임 또는 잘못된 도르래의 설치로 인해 연결점이 내려가지 않을 시 응시자가 직접조치 * 주로프가 시스템으로부터 이탈되는 경우 감점<로프가 이탈되지 않도록 매듭 등으로 사전조치 가능>	10	
	8. 마네킹에 요구조자용 안전벨트를 착용 → 시스템에 걸착 후 “실시완료” 복창 * 요구조자용 안전벨트가 뒤집혔거나 거꾸로 착용시킬 경우 감점 * 최종적으로 유도로프가 요구조자안전벨트의 등에 있는 D형고리에 걸착되어있지 않은 경우 감점 * 요구조자 안전벨트를 마네킹에 착용시키지 않고 종료하는 경우 실격 * “실시완료” 미복창시 시간측정 계속진행	10	
공통 사항	※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(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) ※ 모든 매듭의 형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 * 매듭의 형태(오양), 매듭과 보조매듭(ex-말뚝매기와 움매듭)의 간격 3cm미만, 잔여로프의 길이(10~30cm) ※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수량	감점

평 가 결 과		100	
제한시간 : 8분			
최종 평가기록 :	분 초	합 격	불합격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6. 수평구조

(제한시간 : 10분)

응시번호	성 명	(서명)	평가관	(서명)
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 장비

- 준비물 : 기동복/화(활동복), 안전벨트(상·하 일체형), 레펠장갑, 구조헬멧
- 평가장비 : 로프, 도르래, 자동확보장비, 등반기, 베이직, 역회전방지도르래, 카라비너, 코드슬링 등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평가장비(로프는 매듭을 풀지 않은 상태)를 지정된 구역 안에 장비별로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		
설치 (70)	1. 현장안전 확인 → 확보지점에 자기확보를 실시 * 현장안전확인을 복창하지 않거나 주변을 보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감점 * 자기확보 미실시 또는 안정된 확보물과 안전벨트 D형고리에 미결착시 감점 2. 로프발사총 격발자세(평가운영상 로프총 사용불가)에서 “로프총 발사” 복창 후 5초간 대기 (로프전개 과정) 후 견인줄 전달(평가운영상 로프전달을 “로프당기세요” 복창으로 가름) * “로프총 발사” 미복창 및 발사자세(발사각도 45°이상)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로프총 격발 후 5초간 대기하며 “하나 ~ 다섯”을 복창 및 “로프당기세요” 복창하지 않은 경우 감점 3. 확보지점에 확보판 설치 → 자동확보장비에 로프를 연결 후 확보판에 걸착 → 손으로 당겨 로프텐션을 유지 * 상단에 설치해둔 로프에 걸착된 카라비너 및 확보지점에 주로프 또는 도르래를 걸착하는 경우 감점 * 자동확보장비의 위아래 방향을 뒤집어 설치할 경우 감점 * 자동확보장비에 로프를 반대로 걸착하는 경우 감점, 이를 수정하지 않고 다음 항목으로 진행하는 경우 실격 * 자동확보장비를 확보판걸착 후 손으로 당겨 도르래설치 전 기본적인 로프텐션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감점 4. 간접당김도르래시스템 1/2 간접당김장치 설치 후 등반기를 이용하여 로프 당김 * 직접 당김으로 설치하거나 간접당김 6:1도르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감점 * 간접도르래시스템을 2회 이상 이동시켜 로프를 당기지 않거나 로프텐션이 미흡한 경우 감점 * 도르래 시작매듭의 고리크기가 카라비너보다 크거나 잔여로프 길이(10~30cm) 등 부적절한 경우 감점(10) * 확보판과 도르래 사이가 한바퀴 이상 틀어지거나 밀접하여 큰 마찰을 일으킨 경우 감점(10) * 도르래를 확보판에 단독으로 걸착하지 않고 주로프 카라비너에 걸착하는 경우 감점(15) * 도르래로프를 당긴 후 자동확보장비의 주로프를 당겨주지 않는 등 운용능력이 부족한 경우 감점(15) 5. 당겨진 주로프를 후방 확보물에 매듭(말뚝+움매듭)을 실시하여 2차 안전확보 실시 * 2차 안전확보 매듭이 자동확보장비보다 아래에 있거나 매듭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2차 안전확보 미실시 하는 경우 (최종 득점에서 30점 감점)	10 10 15 25 10	
진입 (30)	6. 도하장비 설치(등반기, 코드슬링) → 진입도르래설치(텐덤, 역회전방지도르래) → 안전벨트 (신체)에 진입장비걸착 → 역회전방지도르래 캠 설치 → 자기확보 해체 후 “도하 준비 끝” 복창 → 평가관의 지시에 도하 → 도하완료 후 자기확보 실시 → 실시완료 * 도하장비의 코드슬링의 길이가 응시자 신체와 맞지 않는 경우 감점(10) * 진입도르래(역회전방지)와 벨트를 연결하는 카라비너의 잠금 방향이 아래로 향한 경우 감점(15) * 자기확보를 해체하지 않고 “도하준비 끝” 복창하는 경우 감점(15) * 역회전방지도르래의 열판과 로프가 마찰을 일으키는 경우 감점(10) * 역회전방지도르래의 잠금을 하지 않고 도하하거나 횡단중 등반기가 역회전방지도르래 사이에 낀 경우 감점(15) * 자기확보로프를 휴대하지 않거나 도하완료 후 자기확보 미실시한 경우 감점(15) * 역회전방지도르래를 반대방향 또는 뒤집힌 방향으로 설치하여 도하하는 경우 감점 * 진입장치의 카라비너가 벨트에 걸힘이 안된 상태로 “도하준비 끝” 복창하는 경우 실격 * 도하중 신체가 위험지역 지면에 닿은 경우 실격	30	
공동 사항	※ 각 항목 모든 카라비너 잠금 상태 불량(총점에서 1개당 10점 감점) ※ 모든 매듭의 형태가 적절하게 유지되지 않은 경우 감점 <※ 코드슬링 제외> * 매듭의 형태(오양), 매듭과 보조매듭(ex-말뚝매기와 움매듭)의 간격 3cm미만, 잔여로프의 길이(10~30cm) ※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수량	감점

평 가 결 과		100
제한시간 : 10분	합 격	불합격
최종 평가기록 :	분	초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7. 교통사고 인명구조(에어백)

(제한시간 10분)

응시번호	성 명	(서명)	평가관	(서명)
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장비

- 개인장비 : 기동복/화(활동복), 방화복상의, 허리벨트(선택), 구조헬멧, 보안경, 구조장갑
- 평가장비 : 고임목, 휴대용원치, 에어백세트, 버팀목(규격 5(10)×10×50cm), 마네킹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평가장비를 지정된 구역 안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		
현장 확인 (5)	1. “현장안전 확인” 복창 → 차량 내·외부 위험요소 확인 → 요구조자 파악 → “차량하부 요구조자 1명” 복창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정확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우 감점	5	
안전 조치 (20)	2. 유관기관 및 대원에게 “차량을 통제하십시오”, “소화기를 배치하십시오” 복창하여 지시	5	
	3. 차량 앞/뒷바퀴에 고임목을 바퀴에 밀착하여 고정(4개) * 고임목을 밀착하여 고정하지 않거나 미실시 경우 감점 * 에어백 운용 전까지 미실시 하는 경우 최종득점에서 30점 감점	10	
	4. “차량안정화 확인” 복창 → 운전석 문개방 → 차량내부를 확인하며 “기어(P)확인”, “시동정지”, “제동장치확인” 복창 *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인 복창만 한 경우 감점 * 차량내부를 확인할 때 차량에 탑승하거나 신체로 차량에 하중을 증가시키는 경우 감점	5	
응급 처치 (5)	5. “괜찮으십니까?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?” 복창하며 요구조자의 의식확인 후 구급대원에게 “응급처치를 실시하십시오.” 복창하여 요구	5	
원치 운용 (20)	6. “휴대용원치 장비점검” 복창 후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설치 [순서] 원치 운반 → 와이어 전개 → 차량 걸착 → 와이어 연결 → 걸림장치 작동 → 레버조작 → 적절한 텐션유지(완료)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조작레버 등 작동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* 휴대용원치 미설치 또는 와이어 연결 부적절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단계로 진행한 경우 실격	20	
에어백 운용 및 구조 (50)	7. “에어백 장비점검” 복창 후 압력게이지 등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걸함·설치 [순서] 압력조절기와 공기용기 걸함(사전 걸함상태로 실시) → 압력조절기와 조정기연결 → 조정기와 에어백연결 → 실린더개방 → 공기압력조절(7~8bar) → 에어백 위치선정 및 버팀목준비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장비결합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* 공기압력조절이 부적절하거나 호스가 분리되는 경우 감점 * 요구조자의 위치를 판단하지 않은 에어백의 인양위치 및 걸침 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감점	30	
	8. 에어백조작 및 버팀목설치 → 차량인양 후 “구조완료” 복창 * 한 에어백만을無理하게 사용하거나 한 번에 버팀목 1개 이상의 높이만큼 인양한 경우 감점 * 목표치까지 인양 후 차량이 고임목에 살짝 걸칠 수 있도록 에어백을 낮추지 않은 경우 감점 * 차량의 중량이 에어백보다 버팀목에 더욱 실리는 경우 감점(버팀목은 2차 확보의 역할) * 버팀목을 “#자형”으로 쌓아올리지 않거나 최상단 버팀목이 차량의 방향에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버팀목의 끝이 5cm정도 남도록 겹치지 않거나 반듯하지 못하게 쌓아올리는 등 고정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감점 * 차량 밑(손이 끼일 수 있는 위치)에서 버팀목의 옆면을 파지하지 않고 윗면이 올라오도록 파지하는 경우 감점 * 에어백과 버팀목의 위치가 올라르지 않거나 에어백조작이 부적절하여 차량이 요구조자의 방향으로 기운 경우 실격	20	
공 통	※ 장비운용능력 불가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파손(파손예상)과 안전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된 경우 실격 ※ 평가표에 제시된 복창을 하지 않은 경우 매회 5점 감점 ※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수량	감점

평 가 결 과		100
제한시간 : 10분	합 격	불합격
최종 평가기록 :	분	초

인명구조사 2급 실기 종목별 평가표

7. 교통사고 인명구조(유압장비)

(제한시간 10분)

응시번호	성 명	(서명)	평가관	(서명)
------	-----	------	-----	------

○ 준비물 및 평가장비

- 개인장비 : 기동복/화(활동복), 방화복상의, 허리벨트(선택), 구조헬멧, 보안경, 구조장갑
- 평가장비 : 고임목, 휴대용원치, 유압장비세트, 마네킹

진행 단계	평 가 항 목	항목 점수	평가 점수
준비	응시자는 평가장비를 지정된 구역 안에 정렬하고 시작지점에 정위치한다. * 모든 장비는 평가실시 전 응시자 스스로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시 평가관에게 요구한다.		
현장 확인 (5)	1. “현장안전 확인” 복창 → 차량 내·외부 위험요소 확인 → 요구조자 파악 → “차량내부 요구조자 1명” 복창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정확한 동작을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경우 감점	5	
안전 조치 (15)	2. 유관기관 및 대원에게 “차량을 통제하십시오”, “소화기를 배치하십시오” 복창하여 지시 3. 차량 앞/뒷바퀴에 고임목을 바퀴에 밀착하여 고정(4개) * 고임목을 밀착하여 고정하지 않거나 미실시 경우 감점 * 에어백 운용 전까지 미실시 하는 경우 최종득점에서 30점 감점	5	
원치 운용 (20)	4. “휴대용원치 장비점검” 복창 후 장비를 점검하고 순서에 맞게 설치 [순서] 원치 운반 → 와이어 전개 → 차량 결착 → 와이어 연결 → 걸림장치 작동 → 레버조작 → 적절한 텐션유지(완료)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하거나 일부항목을 미실시 또는 조작레버 등 작동능력이 미흡한 경우 감점 * 휴대용원치 미설치 또는 와이어 연결 부적절로 기능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단계로 진행한 경우 실격	20	
유압 장비 결합 (15)	5. “유압장비 점검” 복창 후 장비의 외관과 연료 및 유압을 점검하고 유압장비를 결합 [순서] 유압호스를 엔진펌프와 유압콤비(전개기)에 연결 → 전원스위치(ON) “초크밸브(CLOSE)” “엑셀레이터 시동위치(1/2지점)” 복창하며 레버조작(장비조건에 따라 레버조작) → 시동 → 초크밸브(OPEN * 자동개방장비는 제외) * 시동 전 레버조작을 누락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감점 * 유압장비 결합 및 조작 불가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 실격	15	
구조 단계 (45)	6. 「배터리 차단」 “보닛개방” 복창 후 유압장비를 전개하여 보닛을 개방 → “배터리차단”, “(-)(+)제거” 복창하며 배터리를 차단(복창으로 같음) * 엑셀레이터 1/2이상 RPM에서 운용하지 않거나 유압레버 개방을 누락한 경우 감점 * 배터리(-)를 우선차단 하지 않은 경우 감점	5	
	7. 「차량문 개방(제거)」 “휠더압착” → “경첩노출” → “경첩절단” → “차량문개방” 각각 복창하며 유압장비를 조작하고 차량문을 개방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, 일부항목 미실시, 작동능력미흡, 장비가 실제 실행지점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감점	5	
	8. “차량안전화 확인” 복창 → 운전석 문개방 → 차량내부를 확인하며 “기어(P)확인”, “시동정지”, “제동장치확인” 복창 *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인 복창만 한 경우 감점	5	
	9. “괜찮으십니까? 여기가 가장 불편하십니까?” 복창하며 요구조자의 의식확인 후 구급대원에게 “응급처치를 실시하십시오.” 복창하여 요구	5	
	10. 시트(운전석) 레버를 조작하여 공간 확보 시도 및 안전벨트 제거	5	
공 통	11. 계기반 전방이동 후 “구조완료” 복창 [순서] “A필라 기반부 절단” → “A필라 절단” 복창하며 유압장비를 조작 → 엔진펌프의 엑셀레이터 낮춤 → 유압레버 닫음 → 유압콤비 분리 → 유압램 연결 → 유압레버 개방 → 엑셀레이터 작동위치(RPM 1/2이상) → 유압램을 조작 → 계기반을 전방이동 및 구조 공간을 확보 → “구조완료” 복창 * 순서에 맞지 않게 진행, 일부항목 미실시, 작동능력미흡, 장비가 실제 실행지점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감점	20	
	* 장비운용능력 불가 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장비의 파손(파손예상)과 안전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된 경우 실격 안전상 진행이 불가하다 판단된 경우 실격 * 평가표에 제시된 복창을 하지 않은 경우 매회 5점 감점 * 장비조작 중 시동이 꺼지는 경우 재시동하여 평가를 진행해야하며 장비상 문제는 감점 아님 * 각 항목의 감점이 항목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항목점수 0점	수량	감점

평 가 결 과	100	
제한시간 : 10분	합 격	불합격
최종 평가기록 :	분 초	